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321
----------	-----

제출연월일 : 2014. 6.18
제 출 자 : 박종욱 대표의원
(찬성자:이만재,장문혁,유인환
정문섭,이정율의원)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심사기간은 2014년 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활동기간

- 2014년 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장문혁 의원, 유인환 의원, 이만재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4. 6.20 (화)	제1차 조례 특위 (13:30)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